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  
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서울시 조례 반영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내용 중 ‘중증장애인’ 을 ‘장애인’ 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